

장학위원회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09.6.1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장학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장학금 지급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항공대학교 장학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.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위원회는 학생처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각 학부(과)장으로 구성한다.

제3조 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 총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한다.

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예산에 관한 사항
2.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, 수혜기간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
3. 추천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

제5조 (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회의주관) ① 위원회는 학생처에서 주관한다.

②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.

제7조 (보고)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작성,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8조 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- 부 칙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